

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
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28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5.

발 의 자 : 조승환 · 김성원 · 김태호
인요한 · 유용원 · 서지영
이성권 · 이달희 · 정성국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로의 이전은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, 해양수산산업의 집적·육성 및 국제적 거점화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
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 최대 항만도시로서 해운·수산·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은 물론 친환경선박, 친환경연료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발전 잠재력이 크고 국제항만과 도심, 배후산업단지를 연계할 경우 세계적 수준의 해양산업 및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.

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산산업의 체계적 육성, 해양수산산업 혁신지구와 집적지 조성, 국제해양특구 지정과 국제적 해양거점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

법을 제정함으로써,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집적과 혁신을 촉진하며 부산광역시를 국제적 해양거점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해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다.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(안 제6조).
- 라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, 기업, 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(안 제7조).
- 마.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

업육성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음(안 제8조).

바.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시장의 관할 구역 중 해양관광·해양수산물산업의 선진화·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9조).

사. 국가 및 부산광역시시는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,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아.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, 교육,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자.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(안 제12조).

차.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·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
카. 부산광역시시장은 해양수산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물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
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라 해양수산
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고 해양산업의 집적과 혁신을 촉진
하며 부산광역시를 국제적 해양거점 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균
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해양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
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이전 대상기관”이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
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.
2. “해양수산산업”이란 해운, 국제물류, 수산, 조선, 조선기자재, 금융
등 해양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
다.
3. “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”란 해양수산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조성되
는 단지로서 연구·생산·정주(定住)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복
합 혁신 거점지역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를 말한다.
4. “해양수산산업집적지”라 함은 해양수산부 관련 공공기관, 기업,
연구기관 등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과를 확대할
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5. “국제해양특구”란 해양관광·해양수산업 및 도심 배후지역의 기능이 결합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의 책무 등) ①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 거점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심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해양수산업의 첨단화·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해양수산업육성기본계획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업육성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양수산업 관련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2. 해양수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 및 시험·인증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3. 해양수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·금융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

4.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

5. 해양수산산업 분야의 국제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(이하 “혁신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혁신지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.

1. 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

2.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

3. 유치원·초중등학교·국제학교 등 교육시설

4. 문화·체육·의료·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

5. 해양수산산업 분야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

③ 그 밖에 혁신지구 지정요건, 지정 방법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해양수산산업 집적지의 조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혁신지구에 해양수산산업 집적지를 조성하고 관련 공공기관, 기업, 연구기관 등

이 밀집하여 상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집적지에 해양기술연구 기관, 해양플랜트·해운 등 관련 기업,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의 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수산산업육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해양수산산업 분야별 연계 및 협력사업의 발굴
2. 해양수산산업혁신지구 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방안 협의
3. 해양수산산업 관련 기관·단체 등의 건의사항 청취
4. 그 밖에 해양수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국제해양특구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장의 관할 구역

중 해양관광·해양수산업의 선진화·국제화에 유리한 지역을 국제해양특구(이하 “국제해양특구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양특구를 지정한 경우 국제해양특구에 교통·문화·관광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해양특구가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해양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국제해양특구 지정 대상지역의 요건, 지정 절차·방법 및 국제해양특구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국제해양특구에 대한 지원 등) ①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 내 항만,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한 용지 매입비의 융자, 토지의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부산광역시는 국제해양특구로 이전하는 기업·투자기관·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산업기반시설,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·운영 지원
2. 해양수산업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시설 설치에 필요한 투자비

3. 해양수산업 관련 분야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

4.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

제11조(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지원) ① 국가는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, 교육, 교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현재 이전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직원 및 신입직원에게도 적용한다.

제12조(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 대한 주택 공급 및 특례) ① 이전 대상기관의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「주택법」 제54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

② 부산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주택의 공급 기준, 입주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「출입국관리법」에 관한 특례) 법무부장관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특구에 입주한 연구기관·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

협약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) ① 부산광역시장은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정부의 보조금
3. 이 법에 따른 특구 등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
4.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
5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·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